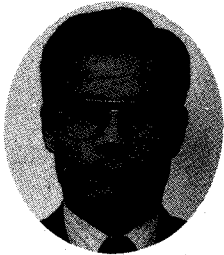


개정된 환경보전법 해설



김 만 호
<환경청 수질관리과장>

차 례

1. 서 언
2. 주요개정 내용
 - 가. 폐수배출허용기준 (별표 6, 6 폐수)
 - 나. 폐수배출시설 (규칙 제 3 조, 별표 2, 4 항)
 - 다. 배출부과금제도
 - 라. 폐수위탁, 수탁처리 정비
 - 마. 행정처분기준강화
3. 결 언

1. 서 언

지난 1989년 1월5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됐다.

그동안 환경청에서는 공단내의 전체 업소와 공단외의 1~3종 업소,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5종 업소를 직접 지도, 점검을 하면서 사업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방지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배출업소는 자발적으로 폐수관리를 잘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소는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의 강의 오염상태를 보면 그리 만족한 상태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산업폐수도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그 원인의 첫째는 우리나라의 자연 특성으로 인한 수자원의 양적인 제한이다. 즉, 1년 강우량 1,100mm의 약 60%가 7-9월에 편중되어 장마철과 갈수기의 강우량 비율은 40대1이나 된다. 또한,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적어서 하천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자정작용에 의하여 정화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둘째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공장수의 증가와 폐수량의 증가로 절대적인 환경오염량이 증가한 점이다. 특히, 폐수배출업소수를 보면 1980년에 3,984개소에서 매년 15% 증가하여 1988년에는 8,570개소로 되었고, 폐수배출량도 연간 20%씩 증가하여

현재 1일 460만톤이나 되고 있다.

셋째는 도로포장, 도시개발등 토지이용의 확대로 땅에 스며드는 물보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많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어떠한 노력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천의 오염은 막아야만 한다. 이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런 차원에서 각종 기준과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였고 특히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폐수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하겠다.

2. 주요개정 내용

가. 폐수배출허용기준 (별표6, 6.폐수)

1) 지역구분조정

지역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청정지역	환경기준(수질) 1등급 정도의 수질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환경기준 1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가 지역	--- I등급 정도의 수질 ---	--- II 등급 정도의 ---
나 지역	--- II등급 또는 III등급 정도의 ---	--- III, IV, V 등급 정도의 ---
다 지역	--- IV등급 정도의 ---	삭 제
특례지역	--- V등급 정도의 ---	환경청장이 공단폐수종말처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 군수가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 8 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지구

해설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사업장이 설치, 위치해 있는 지역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5등급에서 “다”지역이 삭제된 4등급, 즉 “청정”, “가”, “나”, “특례” 지역으로 축소, 조정했다.

따라서, 곧 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구분을 재고시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고시되는 지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2) 배출허용기준

지역 별	개 정 전	개 정 후
청정지역	50이하	50이하
가 지역	100이하	80이하
나 지역	150이하	100이하

해설

배출허용기준은 1종(폐수 1일 3,000m³ 이상) 업소에 한하여 BOD, COD, SS의 기준을 20~30% 강화시

켰다. 이렇게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시킨 사유는 전체 폐수배출업소 8,570개 중에 1종 사업장은 102개 업소이나 폐수배출량은 1일 460만m³중 87%나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업소의 폐수를 개선 처리하게 되면 하천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울산 지역에 한하여 총량규제를 하고 있고 수질에도 총량규제 개념을 도입시킨 것이다. 이때의 종별구분에 따른 폐수배출량은 폐수시설 용량으로 계산한다. 즉, 1일 폐수를 3,000m³ 발생하여 1,000m³은 재이용하고 실제로 2,000m³만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용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종 사업장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1종 사업장은 폐수 발생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3) 공단폐수처리장 또는 농공지구의 배출허용기준

개 정 전	개 정 후
청정,가,나 등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별 기준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에 관계 없이 공단폐수처리구역 및 농공지구내 BOD : 30ppm COD : 50ppm SS : 70ppm

*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하수종말처리장,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농공지구 오·폐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 배출업소에 대한 별도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시행자의 요청에 의거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함.
(개정령 (주) 1 참조)

해설

공단폐수처리장(청주, 대구, 이리, 진주, 여천시 소재)과 농공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폐수처리장의 배출허용기준은 방류수 수질기준과 같이 BOD 30ppm, COD 50ppm, SS 70ppm에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공단폐수처리장과 공단폐수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각 업소는 특정유해물질이 폐수중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자체내의 방지시설에서 1차 처리를 해야 한다. 이때의 BOD, COD, SS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은 원폐수를 공단 처리장과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 되지만 특정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준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만일 어떠한 업소가 공단폐수처리장이나 농공지구내에 있으면서 별도로 자체의 방지시설로 BOD, COD, SS를 처리코져 할 경우는 해당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4) 배출허용기준 적용항목 추가

○용해성 철 함유량

지역	기준
청정	2mg/ℓ 이하
가	10mg/ℓ 이하
나	10mg/ℓ 이하
특별지역	10mg/ℓ 이하

해설

현행 배출허용기준 항목 23개에서 용해성 철 함유량을 추가한 것이다.

5)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3항)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1989년 12월31일까지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9년 12월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4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환경지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1종 사업장은 1989년 12월31일까지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개정된 배출허용기준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1989년 12월31일까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자는 1989년 5월5일(4개월)까지 개선계획서를 허가기관(해당지청, 또는 시, 도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폐수배출시설(규칙

제3조, 별표 2, 4항)

1) 축산시설 규모강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반지역	특별청소지역	일반지역	특별청소지역, 상수보호구역및 그 인접지역
돈사시설	면적 1,400m ²	면적 700m ²	면적 1,400m ² 사육두수 1,000두	면적 700m ² 사육두수 500두
우사시설 마사시설	면적 1,200m ²	면적 600m ²	면적 1,200m ² 사육두수 100두	면적 600m ² 사육두수 50두

해설

폐수배출시설중 축산시설에 대한 허가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다. 전국 가축사육두수중 소는 약 222만두, 돼지는 427만두로써 허가대상 업소는 소의 경우 59개 업체의 23,000두(전체 두수의 1%), 돼지는 144개 업체의 40만두(전체 두수의 9.4%)로써 대부분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폐수는 고농도 유기

성 폐수(BOD 30,000mg/ℓ)로써 방지시설 및 운영비의 과다를 기화로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지역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축산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면적 뿐만 아니라 두수도 해당 되면 배출시설 허가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2) 식료품 제조시설(두부제조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배출시설	시설합계	배출시설	시설합계
세척시설	용적 2m ³ 이상 또는 용수 1m ³ / 시간이상	좌동	좌동
신설	신설	침지시설	용적합계 5m ³ 이상 또는 용수 1m ³ /시간 이상

이번에 개정된 식료품 제조시설의 배출시설은 영세한 두부제조 공장들을 배출시설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 위함이다. 두부공장은 대부분 도시내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타법 관련(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무허

가 업소가 많고, 또한 업소의 영세성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두부공장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유기성 폐수(혼합폐수 BOD 5,000mg/ℓ)는 원폐수가 직접 배출된

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치로 전체 263개 업소중 54%인 143개 업소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 사회서비스시설(의원, 치과의원)

현		행		개		정	
배출시설	시설합계	배출시설	시설합계	배출시설	시설합계	배출시설	시설합계
병원시설 X-Ray필름 현상시설	병상80개 이상 1 세트 이상	좌 동 X-Ray필름 현상시설	좌 동 2 세트 이상				

해설

사회서비스시설중 X-Ray필름 현상시설 1세트 이상을 2세트 이상으로 완화, 개정 하였다. 이렇게 완화, 개정한 사유로써는 의원, 치과의원인 경우 X-Ray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전국에 약 8,000개소나 되며 일시에 배출시설 허가에 따른 상당한 업무량과 민원인 입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X-Ray시설에서는 정착액, 현상액, 세척액이 발생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은이 함유된 정착액은 전량 수탁업사

에게 위탁판매 처리되고 있고 현상액, 세척액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배출되고 있으므로 하천수질오염에는 별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받은 의원, 치과의원은 허가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던가 아니면 허가기관에서는 직권허가취소시킬 것이다. 앞으로 이들 업소는 정착액을 반드시 수거하여 수탁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4) 기타시설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일 반 지 역	상수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특정시설: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폐수	0.1m ³ /시간	중전과 같음	0.2m ³ /일
일 반 시 설	1m ³ /시간	중전과 같음	2m ³ /일

해설

기타시설에서 일반지역에는 허가대상규모에 변화가 없으나 상수보호구역내의 특정시설과 일반시설은 각각 0.2m³/일, 2m³/일로써 5배나 허가대상을 강화하였다.

5)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별표2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되,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시행일로

부터 3월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 배출부과금제도

1) 년도별('89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89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2,2809로 결정 고시

해설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10 제 ①항에 의하면 환경청장은 매년 전년도('88년도) 부과금 산정지수(2,0736)에 전년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2,0736에 10% 인상한 2,2809로 결정, 시행하게 되었다. 배출부과금 부과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아직도 많은 배출업소가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2) 증가산금제도 신설

매월 증가산금 2%씩 추가 부과함

해설

배출부과금을 부과후 30일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있고, 매월이 경과할 때마다 2%씩 추가 부과하도록 할 조치이다. 이 증가산금은 총 과부액의 20%이내에서 부과하며 50만원이하의 부과금에는 증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폐수위탁·수탁처리 정비

1) 위탁폐수 대상 확대

다. 행정처분기준강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개 정 전	개 정 후
○특정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로써 1일 폐수 배출량이 5 세제곱미터 이하인 폐수	○물리, 화학적 방지 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능한 폐수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5 세제곱미터 이하인 폐수. 다만, 공업배치법시행령 제 7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 환경청장이 정하는 폐수	○해양오염방지법 제 10 조제 4 항 규정에 폐수로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처리가 가능한 폐수 ○기타 환경청장이 정하는 폐수

해설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일 5m³이하의 특정유해물질 함유폐수이외에 전국 22개 수탁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무기성 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고정형 파이프 또는 토관으로 연결, 수집하여 공동처리코져 하는 경우의 폐수를 포함 시키면서 5m³ 개념의 폐수량을 철폐한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고농도 유기성 폐수를 배출해역 지정을 받고 운반선 등록을 받아 해역에 배출하고자 하는 폐수를 포함시켰다. 이상의 대상폐수는 그동안 환경청 고시로 시행하여 오던 것을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삼입한 것이다.

위 반 사 항	근 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 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법 제 18 조제 2 항 법 제 20 조제 2 호	조업정지 10 일	조업정지 30 일	허가취소
(2) 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관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 또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이나 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 역의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나) 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 역내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 17 조 법 제 18 조 제 1 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3) 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 17 조 법 제 18 조 제 1 항 법 제 19 조 제 1 항	개선명령	조업정지	이전명령
(4) 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 18 조 제 2 항 법 제 20 조 제 2 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5) 법 제 1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 19 조 제 1 항 법 제 21 조	이전명령	조업정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나)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21조	폐쇄명령		
(6)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 법 제20조 제1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할 때				
i)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경우	법 제20조 제1호	경 고	허가취소	
ii) 부허가 배출시설의 경우	법 제21조	경 고	폐쇄명령	
(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자가 이전명령기간내에 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호	허가취소		
(라) 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 부착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호	경 고	허가취소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판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법 제16조 제2항의 조업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호	경 고	허가취소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7조 법 제18조 제1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9)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호	경 고		
(나)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기간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호	경 고		

해설

1) 위반회수 적용기간 확대

위반회수 적용기간을 1년기간에서 2년간으로 확대 강화했다. 즉, 매 위반사항을 과거 1년동안 몇회했느냐에 따라 행정처분하던 것을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적용받을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업소 단속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많아지는데 1년 평균 업체 단속회수는 2-3회 정도 밖에 안되어 4회 위반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1년 기간은 짧은 감이 있어,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그 기간내의 단속회수를 누적 계산하여 업소로 하여금 더욱 위반회수를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1991년 1월4일까지 각 항목마다 위반회수를 계산해서 매 회수마다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예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부착(적산 전력계, 적산 유량계, COD 자동 측정기등)등의 부착 및 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의 (라)항) 개정전에는 1-3차는 개선명령, 4차에 가서 조업정지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허가취소를 받게 되었다. 일단 허가취소를 당하게 되면 최소한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이 되어야 하고 환경기술감리를 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사업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됨으로 더욱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 행정처분내용의 실효성 확보

개정전에는 행정처분기준에 4차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하여 실제로 4차까지 적용되는 사례가 적었고 이것을 3차로 단축하면서 실효성 있게 조업정지를 하여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불

사 원 모 집

당사는 국내 최초의 E.S.S. 무공해 소각보일러 제조업체로서 89년도 사세확장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산업기계(공장 자동화)부문의 유능한 기술인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분	아	자	격	비	고
영	업	전문대졸	이	상	1. 기계영업분야 2년 유행
					2. 운전기능자
-소각로	-대기오	-염 방지	기	기	류
설	계	이	상	2년이상	
			제	작	실무경력
					2년이상

* 자격증 소지자 및 각분야 3년이상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및 접수처(우편접수에 한함)

- 제출서류:
 - 자필 이력서 1통 (사진 및 연차처 기입)
 - 자기소개서(구체적으로 약5-6page 기술할것)
 -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5 금강빌딩 806호
 삼보 E.S. 산업기계 (우 150-010)

* 제출기간: 1989년 3월



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5
 금강빌딩 806호
 TEL: 785-3064-5
 FAX: 785-3036
 공 장: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258-12
 TEL: (0341-82-1523)

(주)

1. 개선명령·조업정지·이전명령기간은 당해 처분의 이해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29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6)의 (나) 및 (7)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 기간은 조업정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로부터 (2), (6)의 (가) 및 (8)은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예정일, (5)의 (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득예정일, (3)은 방지시설 설치완료예정일까지로 한다. 다만, 개선완료예정일,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득예정일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예정일이 실제 완료일과 상위할 때에는 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의 위반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다만, (1)의 (가), (나), (다)의 경우에는 위반회수를 통산한다.
5. (1)의 (다)의 오염물질의 회석처리라 함은 배출과정중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경청장이 수질오염방지 공법상 회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익을 주도록 하였다. 예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아니한 경우, 즉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경우, 비밀배출구로 무단방류한 경우, 회석배출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 이런것을 실효성 있게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공정중에서 회석처리를 하고저 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청장의 승인(환경기술갈리)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결 언

지난 1월5일에 개정된 시행규칙내용은 어느때 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배출업소가 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관리시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 즉, 1~3종 업소에는 환경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여 업소 스스로의 책임하에 오염물질을 자율관리하게 하였고, 방지시설에는 각종 자동계측기를 부착하여 어느때나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여 운영상태가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

리 도모업체로 지정하여 사업주 및 배출시설 관리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다. 또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방지기금을 마련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고, 정기적인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 기술 지도를 통하여 환경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업소는 방지시설에 투자기피 및 정상가동을 소홀히 하는 업소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은 사업주나 배출시설관리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이제는 더 이상 오염물질을 부적정 처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왔다고 생각된다. 우리 주변의 강과 개천, 심지어는 농촌지역의 소하천을 보더라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 법의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더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우리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 유지해서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갖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